대 법 원

제 2 부

결 정

사 건 2005마1014 각하결정에대한이의

원고, 상대방 원고

피고, 재항고인 피고

원 심 결 정 제주지방법원 2005. 9. 9.자 2005라13 결정

## 주 문

원심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

## 이 유

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·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다카3155 판결,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12517, 94다12524 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,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05. 4. 1. 피고의 영

업소에서 피고의 피용자에게 교부되었으나, 피고는 2005. 3. 28.부터 2005. 4. 8.까지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그 후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2005. 4. 18.에서야 제1심 법원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.

그렇다면, 제1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위반하여 소송계속 전에 한 이 사건화해권고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,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,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그럼에도,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으니,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화해권고결정 및 그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6. 9. 22.

재판장 대법관 김용담

대법관 박시환

주 심 대법관 박일환

대법관 김능환